

공정거래 해외연수 보고서

본 연합회는 회원사 공정거래담당 임직원 29명과 함께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프랑스 경제개발협력기구(OECD)와 독일의 연방카르텔청(BundesKartellamt) 등을 방문하여 카르텔의 국제적 집행과 Leniency Program 운영상황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.

동 해외연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에서 중요해지고 있는 부당공동행위 신고자 감면제도와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국제적 집행 동향 등 선진국들의 경쟁법 집행에 대한 주요 현안문제 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하여 실시되었다. 동 연수에는 삼성카드, (주)KT, SK C&C, SK(주), (주)LG상사, (주)신세계백화점, 신세계건설(주), SK가스, GS칼텍스(주), 직접판매공제조합, SK텔레콤(주), SK네트웍스(주), 제일모직(주), 교보생명보험(주), 삼성생명보험(주), (주)KTF, 삼성전자(주), (주)진로, SK케미칼(주), GS건설(주), GS홈쇼핑(주) 소속의 임직원 29명이 참석하였다.

1. OECD의 최적의 제재조치 및 국제 반독점법 집행 관행에 관한 발표문 요약

▶ 올바른 경쟁정책은 카르텔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임

- 올바른 경쟁정책은 카르텔로 인한 비용(벌금 등)이 적어도 카르텔로 인한 편익만큼은 되어야 함. 손익분기점은 편익이 비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상태를 말한다.

• 법 집행은 주로 다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카르텔의 장기 수익성을 낮추거나 카르텔을 형성하는 결정을 저지할 수 있음.

- 적발 가능성
- 감면제도
- 카르텔 신고자에게 보상(한국)
- 기업들이 불법행위를 신고하도록 장려하는 하도급 계약절차(예, 네덜란드 정부 계약 건)
- 잘 제정된 법령
- 강력한 조사 및 법집행 권한
- 숙련된 인력
- 벌금액
- 적발 가능성을 높이고 벌금액을 명백히 높이는 노력은 불법카르텔 행위 방지에 도움이 됨.

• 카르텔을 방지하는 벌금액은 적발 가능성에 따라 다름.

- 어느 국가에서 적발확률이 낮다면 벌금이 높게 책정되어야 함.
- 만일 카르텔 적발확률이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높다면 다른 국가의 벌금액이 미국의 벌금액 보다 높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임.
- 정책적 시사점 : 국가간 벌금 비교시, 그 국가들의 카르텔 적발확률을 고려해야 함.

▶ 국제적 법집행 노력

- 1990년대 미 법무부와 유럽위원회는 유럽

- 카르텔은 형사법적인 위반이 아님.
- 벌금절차 적용
- 연방카르텔청 벌금부과
- 연방카르텔청의 자유재량권(Discretionary powers)

- 1차 Leniency program의 성공
 - 47건의 적용
 - 시멘트 카르텔 사건 : 6억 유로 이상의 벌금

- 1차 Leniency program 개선의 필요성 :
 - 국제적인 발전
 - 절차적 문제에서 경험
 - 투명성과 확실성, 적발의 향상

▶ **현재의 Leniency program**

- 2006년 3월 도입

- 적용범위
 - 개인과 회사
 - 수평적 경성카르텔(가격유지(price-fixing), 수량 카르텔(quota Cartels) 등)

- 제안(Offer)
 - 벌금으로부터 완전 면책
 - 벌금의 감액(Reduction of fines)

- 충족되어야 할 조건
 - 첫 번째 신고인
 - 연방카르텔청에게 수색영장 획득이 가능하도록 정보와 증거제공
 - 완전한 협력

- 적용배제
 - 주도적으로 카르텔을 이끌어간 사람(Sole ringleader)
 - 카르텔 강권자(Coercer)

- 완전 면책요건
 - 첫 번째 신고인
 - 카르텔을 증명하는 증거제공
 - 완전한 협력
 - 배제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것

- 벌금 감액
 - 완전한 협력
 - 위반사실을 증명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 정보와 증거의 제공
 - 감액 : 벌금의 50%까지
 - 감액의 범위 : 기여도와 신고결과에 따라 결정

- Leniency program 절차
 - 새로운 프로그램은 마커(의사표시)시스템(marker system) 도입
 - 마커(Marker)를 설정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것임.
 - 마커(Marker) : 장래의 신고에 대한 기본 설명
 - 서면 또는 구두 독일어 또는 영어
 - 약속 또는 보장확인서(Statement of assurance)

- 회사의 전략
 - 경쟁당국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것이 필요
 - 회사가 먼저 신청을 하고 연방카르텔청이

많은 정보가 없는 경우 완전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음.

- 회사는 완전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
- 단지 주도적으로 카르텔을 이끌어간 사람(Sole ringleader)과 카르텔 강권자(Coercer)만이 배제
- 완전한 면책 보장

▶ 벌금

- 벌금절차 : 형사소송과 유사
- 2005년까지 카르텔 벌금에 관한 법
 - 50만 유로까지, 그 이상은 매출(the excessive turnover)의 세배 이상까지
 - 문제점 : 매출(the excessive turnover)의 증명, 유럽연합의 입법
- 2005년 개정법 발효
 - 백만 유로까지 벌금
 - 기업에 벌금이 부과되면 : 벌금부과의 한계는 전체 매출액의 10%
 - 연방카르텔청의 문제점 : 단독 위반사건에 대한 법 적용시
- 연방카르텔청 2006년 벌금가이드라인 발표
 - 억지효과(Deterrence) 향상
 - 개별사건에서 적절한 벌금의 수준
 - 예견가능성(Forssee ability)
- 벌금을 산출하는 두 가지 단계
 - 기본액수 : 위반에 의한 매출의 영향과 관련

- 추가요소 : 억지효과(Deterrence), 감소 및 감액 상황들
- 경성카르텔의 경우 : 기본액수는 영향을 받은 매출액의 30%까지 근접하게 됨.
- 액수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채택(예를 들어 : 반복적인 위반자, 카르텔에서 소극적 역할 등)
- 최대한계 : 영향을 받은 기업의 전체매출의 10%
- 기업(Company)은 전체 기업집단(the whole group)을 의미

제1기 공정거래 전문연수 사례분석과정(II) 실시

본 연합회는 경쟁법의 핵심인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공정위와 법원이 실제로 법을 해석하고 판단한 다양한 심·판결사례 중 대표적인 사례를 유형별로 엄선하여, 이를 분석·토의함으로써 구체적인 법 적용사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참석자들의 담당업무 수행능력을 한층 더 제고 시킴과 아울러 범위반 행위의 사전예방 및 민간 업계의 자율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 6월에 실시한 「제1기 공정거래 전문연수 사례분석과정(I)」에 이어 「사례분석과정(II)」을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기업체 임직원, 변호사 등 28개 업체 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.

본 연수과정에서는 법무법인 대륙 김성목 변호사와 대법원 이 황 재판연구관이 “거래강제행위” 관련 분야, 공정거래위원회 박도하 팀장이 “거래상지위 남용행위” 관련 분야, 중앙대 법대 조성국 교수가 “사업활동방해, 구속조건부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” 관련 분야, 법무법인 율촌 홍대식 변호사가 “부당지원행위” 관련 분야 등 5개 주제 11개 사례에 대한 주요쟁점과 당사자주장, 공정위와 법원의 판단 등 관련 사례를 발표하였다.

한편, 연수 후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5% 이상이 1년 이상 공정거래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었으며, 기업체 및 법무법인의 공정거래담당 변호

사들이 주로 참석하였다.

본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37% 정도가 ‘쉬웠다’고 응답하였고, 62% 정도가 ‘보통이다’라고 응답하여 본 「공정거래 전문연수 사례분석과정」이 실제 사례에 적용하고 공정거래관련 법률의 이해를 돕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.

기타 사항으로는 현장에서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한 분야(금융관련 등)의 사례들을 추가시켜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.